

 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12. 24.(월) / 총 6매(본문 4)
	주택기금과	·과장 황윤언, 사무관 허은, 박정란, 주무관 조승현 ·☎ (044) 201-3340, 3341, 3349 / 1599-0001 (콜센터)
	주택도시 보증공사	·기금지원처장 박재영, 팀장 이정환, 이민섭 ·☎ (051) 998-2241, 2254, 2261 / 1566-9009 (콜센터)
보 도 일 시	2018년 12월 26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26.(수) 10:00 이후 보도 가능	

「청년 우대형 청약통장」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「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」도 출시

- ◆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,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
- ◆ 1%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 출시

- 「청년 우대형 청약통장」의 가입 요건이 '19.1.2.부터 대폭 완화된다.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(병역기간 최대6년인정)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, 기존 '무주택 세대주'에 더하여 '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' 및 '무주택 세대의 세대원'도 가입이 가능하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올해 7월 「청년 우대형 청약통장」 출시 하였으며,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다.

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】

구 분		청년 우대형 청약통장(기존)	청년 우대형 청약통장(개선)
가입 자격	나이	만19~만29세(병역기간인정)	만19~만34세(병역기간인정)
	주택 여부	무주택세대주	·무주택인 세대주 ·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·무주택세대의 세대원
	소득	연3천만원 이하(근로·사업·기타)	좌동
혜 택	금리	원금 5천만원까지 연최대 3.3%	좌동
	비과세	이자소득 5백만 원 및 원금 연600만원까지 비과세	좌동 *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
	소득 공제	연간 납입액(최대240만원)의 40%까지	좌동 *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

○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.

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】

구분		가입조건
가입 대상	나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)
	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(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)
	주택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*단,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
가입가능 기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8년 7월 31일 ~ 2021년 12월 31일

□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,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,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세대주 요건의 경우,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,

○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* 가입시 세대주 유지기간(3개월 이상) 확인 신설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.”이라고 전했다.

□ 또한 **신혼부부·청년 주거지원방안('18.7.5)** 후속조치로 12월 28일 **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** 상품을 출시한다.

- 동 상품은 34세 이하,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대할 경우, 보증금은 최대 3,500만원(보증금의 80% 이내),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(월40만원*24개월)까지 저리로 지원한다.

【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 구조 】

대출대상	만 34세 이하,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	대출금리	보증금 대출 : 연 1.8% 월세금 대출 : 연 1.5%
대상주택	전용면적 60㎡ 이하,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	대출기간	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)
대출한도	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4천만원 (보증금의 80% 한도) - (보증금 한도) 3.5천만원 - (월세 한도) 960만원(24개월)	대출담보	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금안심대출보증*

*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통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보증상품

□ 특히, 연 1%대의 저금리 상품으로,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,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.

- * 보증금대출이자 : 3,000만원 * 1.8% / 12개월 = 45,000원
- * 월세금대출이자 : 960만원 * 1.5% / 12개월 = 12,000원
- *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: 97,867원 / 24개월 = 약 4,100원

□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,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.

* 34세 이하 청년 거주형태('17) : 보증부월세 44.2%, 전세 21.9%, 자가 19.2%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 초년생,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,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◆ (사례 1)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한 A씨는(만 26세)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, 직장 근처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, 월세 30만원 원룸을 알아봤으나 보증금을 마련할 돈과 월세 부담으로 인해 서울에서의 근무를 망설이는 중

⇒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의 3.5천만원을 1.8%, 월세를 1.5% 금리로 지원받아 월 이자부담 58,750원으로 원하는 일자리와 주거지 마련

◆ (사례 2) 수도권에서 근무중인 B씨는(만 32세)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, 월세 40만원을 납부할 수 없어,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남

⇒ 만약, B씨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만 대출받았다면 갑작스러운 퇴사로 월세납부가 어려울 경우 원하는 시점에 월세대출을 받아 본래 거주하던 집에서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원하는 직장에 재취업 가능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‘청년우대형 청약저축’ 관련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허은 사무관(☎ 044-201-3340), ‘청년전용 월세대출’ 관련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박정란 사무관(☎ 044-201-33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**주택도시기금 포털** 로 검색하시거나 국토부 콜센터 ☎ 1599-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

구 분	주 요 내 용															
가입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9~34세 (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)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)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,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,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															
우대이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요건) 가입기간 2년 이상 (단,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) (한도) 총 원금 5천만원까지, 최대 10년간(무주택인 기간에 한함) (이율) 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이율 + 1.5%p 우대 *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.3% ('18.7.기준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개월 초과 ~1년 미만</th> <th>1년 이상 ~ 2년 미만</th> <th>2년 이상 ~ 10년 이내</th> <th>10년 초과 시부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이율</td> <td>1.0%</td> <td>1.5%</td> <td>1.8%</td> <td>1.8%</td> </tr> <tr> <td>청년우대형 이율*</td> <td>2.5%</td> <td>3.0%</td> <td>3.3%</td> <td>1.8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(+1.5%p),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</p>	구분	1개월 초과 ~1년 미만	1년 이상 ~ 2년 미만	2년 이상 ~ 10년 이내	10년 초과 시부터	일반이율	1.0%	1.5%	1.8%	1.8%	청년우대형 이율*	2.5%	3.0%	3.3%	1.8%
구분	1개월 초과 ~1년 미만	1년 이상 ~ 2년 미만	2년 이상 ~ 10년 이내	10년 초과 시부터												
일반이율	1.0%	1.5%	1.8%	1.8%												
청년우대형 이율*	2.5%	3.0%	3.3%	1.8%												
비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요건) 가입기간 2년 이상 (한도)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*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('19.1.1.)에 따르며, 연소득·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															
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과 동일 *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%까지 															
전환신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에서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 으로 전환가능 *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(방식)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*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															
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연령, 무주택인 세대주) 각서, 주민등록등본, (병역기간) 병적증명서 (연소득)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(무주택기간) 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」 (해지 시 제출,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) *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															
납입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과 동일 * 원금 1,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, 월2만~50만원 납입 가능 															
가입기간	2018.7.31. ~ 2021.12.31. (일몰제 적용)															

참고2
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청년전용 월세대출 문의 절차

Q)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나 기금대출은 어디에서 상담 받고 가입할 수 있나요?

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대출 가입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또는 청약저축 및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

- 주택도시기금 포털(<http://nhuf.molit.go.kr/>)

-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 1599-0001)
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(☎ 1566-9009)

-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* 단 청약저축은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NH은행에 문의



②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상담 및 가입신청